

발신처 : 인지어스유한회사 에서 안내 드립니다.

2021년도 고용노동부 『청년디지털일자리』사업안내

항시 귀사의 발전을 기원드리오며, 고용노동부에서 청년층에게 IT분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지속근무 또는 연관분야 취업을 촉진하고 기업에게는 실질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는 『청년디지털일자리』사업이 **21년 시행됨에 따라 21년 IT분야로 입사한 청년이 있으신 기업에서는 아래 Site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**

- 아 래 -

1. 신청일자 : 2021/1/1~2021/12/31일까지 채용한 청년(최대6개월 지원)
2. 지원내용 : 참여청년 1인당 인건비(최대 월 180만원)와 간접노무비(월 10만원)

월보수총액	인건비(지원금)	간접노무비 (지원금)
200만원 이상	180만원	10만원
200만원 미만	지급 임금의 90%	10만원

※ 3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 이상을 근무한 경우에만 지원금 지급함.

3. 신청주소 : www.work.go.kr/youthjob 신청하시고 **운영기관(인지어스(유) 익산지사)** 승인 후부터 적용가능

※ 참여 승인 시 승인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고 채용자 명단을 통보해야 함.
(청년 채용일 : 21.1.1~21.12.31 이내 채용시만 유효)

4. 지원대상 기업

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

(5인 이하 사업장도 벤처, 지식서비스, 문화콘텐츠, 신·재생에너지, 성장유망업종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에 따른 청년 창업기업 등은 가능-별도 문의 요망)

5. 지원제외 기업

- 1) 소비·향락업 등 업종
- 2) 국가 및 공공기관 등
- 3) 근로자파견업
- 4) 임금체불 사업주
- 5)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업장
- 6) 지원금 부정수급 사업주
- 7) 고용보험 체납기업

6. 기업 요건

- 1)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기업
- 2) 채용청년의 직무가 청년디지털 일자리 사업 참여유형에 부합하는 IT 관련 직무여야 함[별첨 참조]
- 3) 사업신청일 기준 1개월 전(신청일포함) 인위적 감원이 없는 사업장

7. 지원대상자 요건

- 1) (연령)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 (군필자는 군복무기간 비례포함-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2) (근로계약) 기업과 3개월 이상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(바로 정규직 입사도 가능)
- 3) (보험적용)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자
- 4) (근로시간)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자
- 5) (임금수준) 최저 임금 이상을 지급한 자 (수습기간도 동일)
- 6) 기업이 채용 후 9개월차(첫달 포함) 말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자(미 신청시 국고환수)

8. 지원대상자 제외 조건

- 1) 사업주의 4촌 이내 혈족에 있는 자
- 2) 동일 사업장에 동일·관련사업주가 6개월 이내 재고용한 자
- 3) 사업자등록을 한 자(단, 실제 사업을 하지 않는 자는 가능)
- 4) 사업주가 새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자
- 5) 고등학교/대학교 재학 중인 자
(졸업예정자는 가능, 고등학교경우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한 '현장실습 선도기업'에는 2/3출석 이후 취업가능)

9. 지원한도 : 참여신청 직전월말 기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이내 (최대 30명)

10. 문의처 담당자 : 063-855-0510